

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: 2006. 9
제 출 자: 평 창 군 수

1. 제 안 이 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립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

2. 주 요 골 자

- 가. 어린이집의 명칭 및 업무를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내지 제7조)
- 라.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, 수탁받은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마. 위탁 취소사유 및 위탁금지에 관한 사항, 시설물 등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 내지 제12조)
- 바.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- 사. 어린이집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)
- 아. 어린이집 관리·운영 및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평창군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등 기타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16조)

3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별 첨
- 나. 입법예고: 2006. 6.30~7.19 실시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

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평창군 공립보육시설(이하 "어린이집"이라 한다)의 명칭은 공립○○어린이집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)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
2.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
3.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4.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위탁운영) ①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하며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탁자 선정)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탁계약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서에는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②수탁자는 군수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하며,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(위탁운영기간)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,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.

②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.

④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·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 경우 준공(완공)과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.

⑤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,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9조(행위의 금지)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,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제10조(위탁의 취소)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관계법령,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
2.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
3.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

4.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위탁금지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.

1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는 자

2.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자

제12조(시설물등의 반환) ①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자체규정)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4조(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) ①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. 다만,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,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기타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보고는 임면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④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면을 철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군수는 시설장을 제외한 기타 종사자가 본인이 희망하고 시설장의 제청이 있을 때에는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.

제15조(관계법규 준수)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, 국민연금법,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(준용) 어린이집 관리·운영 및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등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(제6조제1항 관련)

계 약 당 사 자			
갑		평 창 군 수	
을	주 소 (법인명)	전 화 번 호	
	성 명 (대표자명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위탁(수탁)시설의 표시			
명 칭		설치연월일	
소재지		보육 정원	
<p>○○ 어린이집을 위탁관리 하고자 위탁자 평창군수를 "갑"(이하"갑"이라 한다)이라 하고, 수탁자 ○○○를 "을"(이하"을"이라 한다)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다.</p>			
계약기간 : 년 월 일 ~ 년 월 일 (년 월)			
계약내용 : 「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함			
<p>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, 관계법령 및 평창군영유아보육 조례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탁자(갑) : 평 창 군 수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탁자(을) : ○ ○ ○ (인)</p>			

관계법령 발췌

1. 영유아보육법

제12조(국·공립보육시설의 설치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·공립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·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 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6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정신질환자
3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
4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7.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제24조(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) ①(생략)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·공립 보육시설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.

2. 영유아보육법시행령

제21조(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)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.

※ 별표 1 ⇒ 별첨

3.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제24조(국.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)①여성가족부장관,시.도지사 또는 시장.군수.구청장이 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.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,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법제 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.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.)에 다음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,시.도지사 또는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.

- 1.법인의 정관,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에 한함)
- 2.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에 한한다)
- 3.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
- 4.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- 5.보육시설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,시.도지사 및 시장.군수.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한 후 별지 제 16호서식의 보육시설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~ ⑦ (생략)

⑧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,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<개정 2005.6.23, 2006.5.12>

제25조 (국·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의 취소) 여성가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05.6.23>

1.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
2.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4.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
5.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
6.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
7.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8.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
[별표 1] <개정 2005. 6. 23>

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(영유아보육법 제21조관련)

1.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

가. 일반기준

- (1)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
- (2) 「유아교육법」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
- (3)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
- (4)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
- (5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
- (6) 「의료법」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
- (7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나. 가정보육시설

- (1)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
- (2)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

다. 영아전담보육시설 :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

- (1)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
- (2)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

라. 장애아전담보육시설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

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

-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(1) 대학(전문대학을 포함한다)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
- (2)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
- (3)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

마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(전문대학을 포함한다) 또는 법

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(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)하는 보육시설

-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

2.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

등 급	자 격 기 준
보육교사 1급	1.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.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
보육교사 2급	1.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.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
보육교사 3급	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
※ 비고

1. "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"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
 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
 - 나. 「유아교육법」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
 - 다.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
 -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
 - 마.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특수학교(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)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
 - 바.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「유아교육진흥법」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
 - 사. 위의 가.~바.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
 - 아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
2. "보육업무 경력"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
 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
 - 나. 「유아교육법」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, 원감, 교사로 근무한 경력
3. "아동간호업무 경력"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, 보건소 모자보건센터,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.